

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규칙

제 정 2022. 09. 05.

개 정 2024. 02. 23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환경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보조사업에 따른 운영위탁사업인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)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〈개정 2024.2.23.〉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칙은 센터에 한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사업) 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〈개정 2024.2.23.〉

- ① 탄소중립 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지원
 1.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·시행·이행실적 점검 지원
 2.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·시행·이행실적 점검 지원
 3.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지원 등
- ② 탄소중립 모델 발굴 및 확산
 1.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·확산 지원
 2. 수송, 건물, 녹색생활, 자원순환, 농축수산 등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구축 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 등
- ③ 온실가스 통계 관리
 1.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운영·관리
 2. 온실가스 통계 산정·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 관리 등
- ④ 탄소중립 협력사업 및 지역확산
 1.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탄소중립사업 협력
 2. 탄소중립실천연대의 기후위기 대응활동 지원
 3. 지방자치단체 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활동 지원
 4. 지역의 탄소중립정책 추진역량 강화사업 지원
 5. 지역사회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제고 방안 발굴·시행

6. 탄소중립 관련 조사·연구 및 교육·홍보사업 등

⑤ 기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

제4조(운영원칙)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등 운영에 관해서는 환경부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·운영지침에 따른다.

제2장 조직 및 인력 관리

제5조(기구 및 정원)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) 산하에 팀을 둘 수 있으며,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[별표 1, 2]와 같다.<개정 2024.2.23.>

제6조(직원의 구분) 센터의 직원은 센터장, 전문인력(박사급 연구위원, 석사급 연구원)으로 구성한다.

제7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원장이 임명한다. 단, 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상 중에 겸직할 수 있다. 임용자격은 [별표 3] 과 같다.<개정 2024.2.23.>

② 센터장은 원장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센터를 대표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 센터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대행자를 원장이 지명한다.

제8조(전문인력) ① 전문인력은 기후변화, 환경정책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직원을 채용하고, 센터장은 직원들의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
② 센터 소속의 전문인력은 공개모집을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. 임용자격은 [별표 3] 과 같다.

제3장 보 수

제9조(연봉계약) 전문인력의 연봉계약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별도 지침에 의거하여 원장이 체결한다.<개정 2024.2.23.>

제10조(연봉산정 방법 등) ① 전문인력의 연봉산정 방법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별도 지침에 따른다.<개정 2024.2.23.>

② 각종 수당지급 등은 예산범위 내에서 전북연구원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③ 사업예산 및 재무회계 업무처리를 위해 수입지출을 담당하는 직원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한다.

제4장 업무분장

제11조 (탄소중립 정책기획팀) 탄소중립 정책기획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
- ①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·실적점검
- ② 지방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·시행·실적점검
- ③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모델 개발·확산
- ④ 수송, 건물, 녹색생활, 자원순환, 농축수산 등 지역기반의 탄소중립 모델 개발·확산

제12조 (온실가스 종합연구팀) 온실가스 종합연구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
- ①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·연구
- ② 온실가스 통계 산정·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 작성 지원
- ③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운영·관리

- ④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지원
- ⑤ 기타 지역 특성화 사업지원

제13조 (인식개선 실천문화팀) 인식개선 실천문화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
- ① 지역사회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제고 방안 발굴 및 시행 지원
- ② 탄소중립 관련 교육·홍보 사업 지원
- ③ 국내외 도시 및 지역 간 탄소중립 협력사업 지원
- ④ 14개 시군 탄소중립 상호협력 증진활동 지원

제14조 (소통·운영팀) 소통·운영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
- ① 행정 지원 업무
- ② 탄소중립실천연대의 기후위기 대응활동 지원
- ③ 조직체계 정비, 전문인력 확보 등 센터운영 조기정착 지원
- ④ 전문성 및 센터 기능 강화

제5장 사무관리

제15조(문서관리) ① 센터의 문서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
- ② 원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 센터장이 결재한다.

제6장 재무 및 시설관리

제16조(사업계획) 센터의 사업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24.2.23>

제17조(예산 및 결산) 센터의 예산 및 회계처리는 환경부의 탄소중립 지원

센터 지정·운영지침에 따른다.

제18조(시설·기자재의 활용) 센터의 시설 및 기자재 등은 연구원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제7장 보 칙

제19조(제 규정과의 관계) 이 규칙은 환경부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·운영지침을 제외하고는 전북연구원의 제 규정, 규칙 및 지침을 준용한다.

부 칙<2022.09.05.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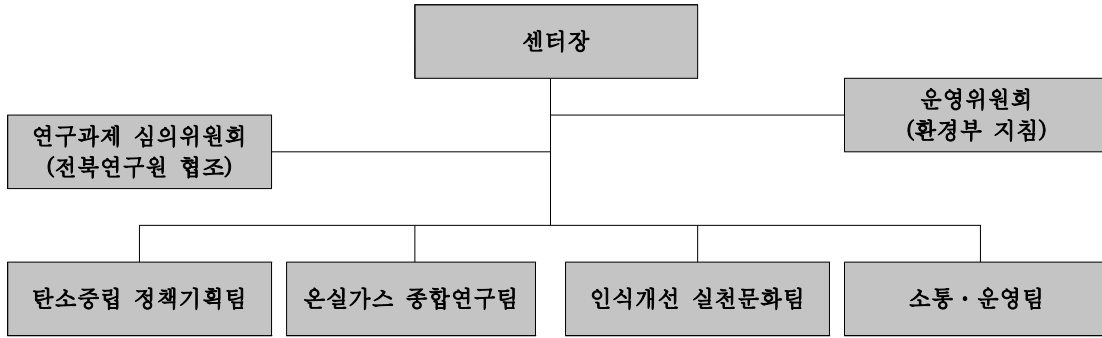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4.02.23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기 구 표



[별표 2]

정 원 표

직	별	직	급	정	원
계				7	
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지원센터		센터장		1	
		전문인력		6	

[별표 3]

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직원의 자격요건

구 분		자 격 요 건
센터장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후변화, 환경정책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 3년 이상 연구 실적이 있는자
전문인력	박사급 연구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후변화, 환경정책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
	석사급 연구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후변화, 환경정책 등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

※ 관련분야 : 환경공학, 환경생태학, 에너지공학, 경제학, 기술경영, 신재생에너지학, 환경계획학 등 에너지전환/산업/건물/수송/농축산/흡수원/폐기물/정책기반의 부문별 세부전공 포함